

의학과 생명윤리

낙태와 생명윤리



●이명진 원장

경희의료원에서 이비인후과 수료 및 전문의를 취득하였고,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명이비인후과 원장이자 의사평론가이다.

들어가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생명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낙태를 반대해 온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가 2018년 5월 26일 12주 이하 낙태를 허용하자는 국민투표를 통과시켰다. 대한민국에서도 낙태죄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심하게 충돌하고 있다.

생명권은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다. **태아가 비록 말을 하거나 시위를 통해 그들의 살 권리를 주장하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태아의 살 권리와 생명이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성적 쾌락과 자신의 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생명의 가치를 외면하면 안 된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생각이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어느 주장도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낙태를 100% 막을 수 없다고 해서 생명의 가치를 상황윤리와 윤리적 상대주의에 양보할 수는 없는 문제다.

어머니의 배 속에 있을 때나 세상에 나왔을 때나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나의 심장이 뛰는 것은 나의 태아기에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살아 있는 것은 태아의 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보호되었기 때문이다. 죽이고 없애고 피하기보다는 베풀고 보호해 주고 지켜 주는 것이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나만의 행복과 편함을 위해 태아를 죽여야만 하는 것일까?

현재 낙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과 찬반그룹의 논조를 살펴본 후 최근 2018년 5월 24일 있었던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의 내용을 살펴보고, 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 모자보건법의 문 제점과 낙태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낙태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

첫째, **낙태에 관한 도덕적 입장**은 3가지로 구분된다.

- (1) 보수주의 입장: 생명 옹호론
 - a. 강건 보수주의: 태아 생명권의 절대적 우선성 주장
 - b. 온건 보수주의: 강간, 태아 기형, 산모 생명 위험 등 예외 인정
- (2) 자유주의 입장: 선택 옹호론
 - a. 강건 자유주의: 임신중절은 그 자체로 그르지 않다.
 - b. 온건 자유주의: 모든 상황을 고려할 경우 임신중절은 그르지 않다.
- (3) 절충주의 입장: 태동, 체외생존가능성 등

둘째, **태아의 인간적인 지위를 기준으로 삼는 입장**이다. 보통 3가지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태아도 완전한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낙태를 반대한다. 생명의 신성함을 근거로 하고 있다. 반면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믿는 사람은 낙태를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생명의 질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 두 입장의 경계에 서서 태아는 잠재적 인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낙태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태아의 생명이 시간적 추이에 따라 발전하며 변한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낙태에 관한 세 가지 견해(기독교윤리학, 노르만 L. 가이슬러)

태아의 위치	완전한 인간	잠재적인 인간	불완전한 인간
낙 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때에 따라서 허용	언제나 해도 된다
근 거	생명의 신성함	생명의 출현	생명의 질
모 권	사생활권보다 생명이 우위	권리들의 결합	생명보다 사생활권이 우위

셋째, 의료 윤리적으로 낙태가 인정되는 경우(생명권과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로 생명윤리 관점에서 이중효과의 원리(RDE ; the rule of double effect)가 작동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태아의 사망을 인정하고 있다. 임신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태아사망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태아의 사망이 이중효과의 원리의 네 가지 조건에 적합하다면 행위의 결과가 나쁜 결과를 발생시켰더라도 그 행위는 윤리적으로 합당하다, 혹은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중효과의 원리란 첫째, 기본 행위 자체가 선해야 하고, 둘째, 행위의 의도가 선해야 하며, 셋째, 나쁜 결과가 좋은 결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좋은 효과가 나쁜 효과보다 앞서야 한다.

2. 낙태 찬성 주장

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그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낙태를 찬성하고 있다. 첫째,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권리는 인간 자유의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낙태를 찬성하고 있다. 둘째, 태아가 3개월 무렵부터 얼굴과 손과 발 등 신체적 특징을 나타내지만 사고나 자아인식, 정신적 능력 등의 기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갖춘 인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셋째, 완전한 피임법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이나 계획에 없는 임신을 끝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넷째, 임신과 출산으로 겪어야 하는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부담이 낙태로 무고한 태아를 죽였다는 죄책감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근친간 또는 강간에 의한 임신을 통해 출생한 아이가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사실을 알았을 때 받을 충격 등을 생각해 볼 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은 심한 경우 자신을 괴롭히는 종양 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처럼 태아도 여성의 행복 추구를 위해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3. 낙태 반대 주장

첫째 논리는 “**낙태는 살인이다**”라는 구호이다. 배아나 태아를 ‘태어나기 전의 어린이’라고 주장한다. 임신한 여성이 태어난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태아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낙태는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것과 도덕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생명권은 모든 다른 권리보다 우선되며,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이며,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행복추구권에 앞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낙태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인명경시 현상이 만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태아를 죽인다면 치매에 걸리거나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자신의 삶의 질의 추구가 다른 생명을 죽여서라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음을 제기한다. 셋째 이유는 낙태가 허용될 경우 성윤리를 타락시켜 여성들에게는 혼외 성관계에 대한 도덕적 육체적 위험성을 경시하게 하고, 남성들에게는 자신의 아이를 방기하는 도덕적 불감증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법률적인 시각으로는 인간생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생명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기타의 기본권 보장은 실제적으로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질서 내에서 생명권은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인간의 생존 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출생, 신분, 인종, 발육과 건강의 정도가 인간의 인격성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환자, 정신박약아, 노인, 신생아,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모두 평등하게 생명권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근거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하기도 한다. 국가는 태아라고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수태되는 순간부터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태아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박탈한다면 법 앞에서의 평등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태아는 헌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도 국가로부터 평등하게 생명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 2018년 5월 24일 낙태죄 공개 변론의 내용

헌법소원을 낸 사람은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다. 그는 2013년 11월-2015년 7월 임신부의 부탁을 받거나 동의를 구해 69차례 낙태 수술을 해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원에 처벌 근거가 된 형법 조항이 위헌인지 따져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2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2012년 낙태죄 합헌판결 이후 6년 만에 공개변론을 가졌다. 공개변론에서 나온 헌법소원 청구인과 법무부 측 변론을 살펴보자.

1) 공개변론 1

◆ **청구인 측 대리인**은 “자기낙태죄 조항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할 것인지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자유를 제한하여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하고 임신 초기에 안전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지 못하게 임부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법무부 측 대리인**은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된다.” “생명권의 제한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낙태를 어느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인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합의를 도출해야 할 문제로서 헌법이 아닌 입법재량권으로 다루어야 한다”면서 “낙태죄 위헌 문제와 낙태죄 개헌의 문제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공개변론 2

◆ **청구인 측**은 “임신 12주까지는 낙태가 임부에게 부담이 적은 시기이다. 태아는 임신 12주 전까지는 독자적 생명 능력이 없는 불완전한 생명체”라고 주장했다.

◆ **법무부 측 대리인**은 “발달의 연속성은 생명의 특징인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호 정도를 달리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3) 공개변론 3

◆ **청구인 측**은 또한 “형법이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여성들이 위험한 수술에 노출돼 있다”며 “임신·출산은 여성만 가능한데, 낙태죄로 여성만 처벌을 받는 것은 여성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며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 **법무부 측 대리인**은 “태아의 생명보호는 매우 중요한 공익이며 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낙태 시술이 가능하다. 의학의 발전으로 모체를 떠난 태아의 생존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초기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부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리인 측의 주장이 국민의 생명권 보호, 국가의 번영을 위한 헌법 정신과 건전한 사회 통념과 윤리를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5. 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모자보건법의 문제점과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모자보건법의 일부 조항과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낙태를 조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은 세계적으로 펼쳐진 산아제한 정책에 편승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1974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이었던 키신저가 제출한 극비 보고서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번져간 이 산아제한 정책은 인류가 저지른 가장 잘못된 정책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모자보건법의 일부 조항을 낙태의 빌미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를 트집 잡아 위헌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오히려 생명보호와 잘못된 낙태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모자보건법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1)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에 적시된 우생학적 사유는 낙태 이유가 될 수 없다. 우생학은 유전학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시대에 만들어진 개념이다. 생명을 경시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개념이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우생학”과 “나치”를 금기어로 정하고 있다. 의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조항이기에 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정신병을 유전적 낙태 이유로 허용하는 것 역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기에 삭제되어야 한다. 유전병도 부모의 유전병이 전부 자녀에게 물려지는 것이 아니고, 또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서 그 삶이 불행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의학적 판단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임신 중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 중에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의 위험도가 각각 다르고 설령 태아가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태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상인 경우가 많다. 풍진의 경우도 임신 18주 이후 감염은 태아에게 결손을 일으킬 가능성이 0%에 가깝다. 감염성 질병에 걸린 임신부는 질병을 치료하면 되는 것이지 낙태 허용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3) 산모가 임신 중 약물을 복용한 경우

임산부가 임신 사실을 모르고 약물을 복용한 경우 대부분이 낙태의 허용기준이 될 수 없다. 임신에 영향을 끼치는 약물이 위험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져 있고, 방사선동위원소와 같은 위험한 약을 제외하고는 임신 중 약물을 복용했다더라도 정상적인 아이를 출산하기 때문이다.

6. 낙태방지를 위한 대안

전체 낙태의 0.3% 미만인 강간과 근친간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명을 죽이는 낙태의 유혹을 벗어나도록 다각적인 종합 대책과 교육이 필요하다.

1)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

낙태가 생명을 중단시키는 무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주장하는 그룹의 논거 중의 하나가 사회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한다. 이 부분이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첫째,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만 18세까지 양육비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자녀 양육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산과 양육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양육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출산장려 재정으로 11년간 126조가 넘는 재정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낙태는 늘고 있다. 정책 실패인 것이다. 간접지원보다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직접 현금지원을 해주어서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 생활하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둘째, 미혼모나 장애아기, 임신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불식과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미혼모와 장애아기, 임신모가 사회에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들을 실제로 돌보고 지원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가정을 해체하는 위험한 성주류화와 성해방의 망국적 탁류에서 벗어나 여성과 가족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셋째, 낙태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부추기는 남성에게 법적 억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과 시술 의사에게만 적용되는 낙태죄를 낙태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부추기는 남성에게도 함께 적용하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넷째, 낙태 대신 분만을 장려하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그룹이나 낙태를 시행하는 의사들이나 모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윤리의식이 위협받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경제적 이윤을 위해 낙태시술을 시행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낙태시술 포기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해 줌으로써 낙태시술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2) 성윤리교육과 성교육

첫째, 낙태를 주장하는 기성세대 타락한 성문화 반성해야

낙태 합법화 주장과 일부 청소년들의 임신, 학생들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원인을 기성세대의 성윤리 의식 저하에서 찾아야 한다. 과학의 발달과 함께 포르노 산업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기성세대와 청소년, 어린 자녀들에게 음란물이 무방비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육체적 욕망만을 추구하며 자신의 감정만 보장받는 것이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이기적인 사고와 저급한 거짓 인권사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성윤리와 가정을 해체하고, 욕망을 욕망하며,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지는 패악한 사조를 은근히 즐기고 묵인한 결과이다. 낙태를 주장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타락한 성문화에 대해 기성세대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둘째, 성윤리가 빠진 성교육은 '독이 든 사과'

성교육과 피임교육은 성윤리를 바탕으로 나이와 시기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 성윤리가 빠진 성교육은 성적 호기심만 자극하는 '독이 든 사과'를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다. 선정적 지식 전달이 아닌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윤리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성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것이라는 것과 반드시 책임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남녀의 해부학적인 구조와 생리에 대한 지식과 피임 등의 방법을 가르치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윤리가 항상 성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의학적으로 인간의 인지발달 단계상 판단력과 도덕성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은 만 18세가 되어야 성숙된다. 만약 그 시기 이전에 급진적이고 부적절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면 아이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부적절한 성적 유혹에 빠뜨리는 나쁜 학습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아이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셋째, 성교육 표준안 잘 지켜지도록 감시해야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일부 교사들이 청소년의 성행위와 임신이 정당하다고 학생들에게 왜곡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러한 일탈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영혼이 피해 입게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지난 수년간 연구하여 마련한 "성교육 표준안"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교육부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도록 학습기준을 정해 놓은 성교육 표준안을 잘 지키면서 교육하는지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생명의 존엄함과 가정의 소중함을 어려서부터 인지하도록 하는 윤리교육이 필요

윤리란 꼭 지켜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해 알려주는 것이다. 윤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행위는 반드시 타락과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지키고 소중히 여겨야 할 자신의 몸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하고 인류에 벗어나지 않도록 올바른 윤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청소년 시기에 성교를 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왜 자신의 성과 몸을 결혼을 위해 소중하게 가꾸고 간직해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결혼의 신성함과 신뢰를 기초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할 때까지 남녀가 서로의 성을 보호해 주고, 자신의 성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나가면서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어떤 이유로도 생명을 죽게 하거나 죽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태아의 생명도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자신의 이익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라도 우리는 낙태를 줄이기 위해 생명과 성에 대한 깊은 성찰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윤리적 민감도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세상 시류에 우리 영혼의 양심을 내맡겨 두고 살 수는 없다. 태아를 죽여서 행복을 찾는 방법보다는 살려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한다.